

서울강남(우)국사 3,4층 유리창 필름 부착공사 시방서

2014. 07.

I. 일반 사항

1. 공사 명칭

본 시방의 명칭은 “서울강남(우)국사 3,4층 유리창 필름 부착공사”로 정하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 (이하 “POMA”)이라 하고, 공사수행자를 (이하 “협력사”)이라 칭한다.

2. 공사 목적

강남우체국 3,4층 집배 작업장 유리창의 버티컬이 파손되어 일광으로 인한 눈부심과 하절기 내부온도 상승으로 작업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아 유리창 필름 부착공사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 개요

3.1 대상 : 서울강남우체국 3,4층(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3.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공휴일 포함)

3.3 공사 내용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층 유리창	전면창 4경간, 후면창 4경간	m ²	127.04	집배작업장
4층 유리창	후면창 5경간	m ²	60.35	집배작업장
합 계		m ²	188	

3.4 공사 범위

가. 3층 건물전면창 4경간, 후면창 4경간

나. 4층 건물후면창 5경간

4. 일반 사항

4.1 “협력사”는 본 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표준계약서”, “ 계약일반조건”,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의 품질을 확

보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제반공정에 반영하며,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4.2 “협력사”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3 “협력사”는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 시켜야하며, 공사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4.4 “협력사”는 시공 중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는 기존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즉시 “협력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협력사”가 진다.

4.5 “협력사”는 모든 자재 반입. 반출시 “POMA”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KS 제품 또는 형식 승인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 “POMA”의 지정 제품으로 한다.

4.6 “협력사”의 공사 전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고 “POMA”의 요청에 따라 보완 조치 및 작업시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4.7 “협력사”는 현장 내 반입된 자재 및 장비, 공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항상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8 “협력사”는 공사 중 발생된 일반 및 산업폐기물 등은 “협력사”의 비용으로 즉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POM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협력사”는 시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시공 상 문제점 발견시는 “POMA”의 대책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POMA”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5. 착공 및 준공

5.1 “협력사”는 공사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POMA”와 일정을 협의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예정공정표
- 기타 “POMA”가 요구하는 보수에 관계된 서류

5.2 “협력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POMA”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POMA”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사”의 비용 부담으로 즉시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공계
- 작업과정(공사 전, 중, 후) 사진
- 품질보증서(10년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 시험성적서
- 기타 “POMA”가 요구하는 공사에 관계된 서류

6. 하자 및 보수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 하자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POM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후 필름의 결함 및 들뜸, 변색 등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책임을 지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II. 특기 사항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실링제로 실링하여야 한다.

1. 시 공

- 1) 유리 및 유리시공 상태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세밀히 조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의 세균, 요철 및 흠집 여부 (용접불꽃 등)
 - 유리의 종류 (투명 홀유리, 투명 복층유리)
 - 강재 샤프의 실링상태 및 유리간격 유지 정도
 - 기타 유리의 파손요인이 될 수 있는 유리 시공상의 문제점
- 2) 세척
통상 수도물을 사용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기름기 등이 있을 시에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3) 스퀴징(Squeegeeing) -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스퀴즈를 반드시 사용하여 하며 스퀴즈의 날은 상태가 좋은 것으로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행하여야 한다.
- 4) 필름의 부착시 필름의 가장자리의 실링 및 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간격을 반드시 띄어야 한다.
- 5) 이어부침 (Splices)
 - ① 시공면이 필름의 표준폭보다 넓을 때에는 시공자는 부침(Overlap Splice) 이나 맞부침(Butt Splice)의 방법을 제시하여 이어부침 방법과 위치를 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롤(Roll)의 제품이라도 보관과정에서 양사이드의 부위가 색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가 서로 접하도록 이어 붙여야 한다.
 - ③ 시공된 필름 면 위에 접착층이 있는 다른 필름(보호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을 부착시키지 말아야 한다.
- 6) 필름 가장자리의 실링(Sealing)
필름의 가장자리를 건조 시킨 후 유리세척시 오는 표면손상 및

2. 필름 규격

성 능	가시광선 투과율	20% 이하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
	열 차단율	80% 이상
	시선차단 및 비산방지	가능
재 질	필름 소재	PET
	필름 두께	0.06mm 이상
	필름 구조	2 Poly

3. 기 타

- 가. “협력사”는 공사 중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협력사”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나. 공사 시행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협력사”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